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934] www.heartmamcare.com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6-09-20] wony0619@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09-23]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하트맘케어(Heartmamcare)]

정 보 공 개 서

[(주) 하트맘케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4. 20.

[(주) 하트맘케어]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702호(구미동, 하나프라자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22-173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711-173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22-173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702호 (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11.01	2022.11.17	김여원	1522-1737	031-711-1737
	법인등록번호	131111-0686732	사업자등록번호	510-87-02883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여원 (주)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702호 (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여원	1522-1737	031-711-1737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김병완 (주)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702호 (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여원	1522-1737	031-711-173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전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 (다른 기업의 가맹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 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2022.11.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702호 (구미동, 하나프라자빌딩)	김여원 외1명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당사는 2022년 11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근거 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별첨1]사업양수도계약서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하트맘케어(Heartmamcare)』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하트맘케어(Heartmamcare)	-
상 호	하트맘케어(Heartmamcare)	-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378412
광 고	-	-
그 밖의 영업표지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374,633	-	-
2022년 (법인전환전)	-	-	-	322,196	-	-
2022년 (법인전환후)	72,730	9,282	63,448	48,451	-17,997	-13,447
2023년	64,887	58,263	6,623	347,095	-404,575	-56,824

☞ 위에 기재된 재무상황은 본사 및 직영점 매출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2022년도 11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11월 이전은 법인사업자로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가맹본부 재무상황며,
2022년 11월 이후에는 현재 법인사업자의 재무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근거 자료는 [첨부 1-1~1-3,첨부2-1~2-3]과 같습니다.

2023년도 현재 법인사업자 재무사항은 위1)과 같으며, 그 근거 자료는 [첨부2-2,2-3]와 같습니다

[첨부1-1~1-3] 2021~2022 본사 및 직영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법인진)

[첨부2-1~2-3] 2022~2023 본사 및 직영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1)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전환 전]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하트맘케어 (Heartma mcare)	김여원	대표이사	2016.04.01.~ 2022.11.25	하트맘케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병완	대표이사	2016.04.01.~ 2022.11.25	하트맘케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법인 전환 후]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김여원	대표이사	2022.11.26.~ 현재	(주)하트맘케어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김병완	사내이사	2022.11.26.~ 현재	(주)하트맘케어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3

☞ (주)하트맘케어 2023년 12월 31일 직원 수입니다.

[첨부3-1] 2023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하트맘케어(Heartmamcare)]외의 가맹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제35류	2016.04.07 출원 2016.11.22. 등록	출원 제41-2016-0016440	김여원	2026.11.22
			등록 제41-0378412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상표권전용사용계약서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하트맘케어(Heartmamcare)』을 시작한 날: 2016년 7월 1일(1호점 오픈)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6년 4월 1일)

2. 『하트맘케어(Heartmamcare)』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김여원의 1명	2016.12.05. ~ 2017.4.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20. 2911호(영덕동,UTOWER)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김여원의 1명	2017.04.11. ~ 2022.11.25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 702호 (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주) 하트맘케어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김여원	2022.11.26. ~ 현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4. 702호 (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3. 『하트맘케어(Heartmamcare)』업종

영업표지	업종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산후조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하트맘케어(Heartmamcare)』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	15	3	19	16	3	20	14	6
서울	4	3	1	4	3	1	6	3	4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0	8	2	10	8	2	8	6	2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2	2	-	2	2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하트맘케어(Heartmamcare)』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4	1	0	0	1	15
2022	15	1	0	0	0	16
2023	16	0	0	2	0	14

☞ [별첨12] 가맹점 목록 및 변경현황

6. 「하트맘케어(Heartmamcare)」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4	157,512	13,473	821,401	121,631	907	78	가맹점 14곳 산출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
대구	-	해당없음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
울산	-	해당없음	-	-	-	-	-	-
세종	-	해당없음	-	-	-	-	-	-
경기	6	157,421	23,465	751,880	68,296	907	78	가맹점 6곳 산출
강원	-	해당없음	-	-	-	-	-	-
충북	-	해당없음	-	-	-	-	-	-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
전남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
경남	-	해당없음	-	-	-	-	-	-
제주	-	해당없음	-	-	-	-	-	-

☞ [별첨3]가맹점 리스트 및 평균 매출액 등, [별첨12]가맹점 목록 및 변경현황

☞ 당사는 가맹점이 5개미만인 지역의,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아 기재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과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전체 평균 영업기간
개업일~2023	14	1,66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지역총판) 및 가맹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당사에서 2023년도 『하트맘케어(Heartmamcare)』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0,014	 (비공	—	
광고	소계		30,014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	
--	---	-------	---	-------	---	--

☞ (주)하트맘케어의 사업연도(2023년도) 말 『하트맘케어(Heartmamcare)』과 관련하여 광고판촉비로 사용한 총금액은 ₩30,014,000로 그 근거자료는 [별첨4] 광고비 매입세금계산서 및 [별첨5] 판촉비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광고신도시지점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고중앙로320(상현동) 광고스타데 1,2층	031-262-7424

2) 가맹금 예치절차

☞ 귀하는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별첨6] 가맹금에스크로서비스 이용계약서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명령 여부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하트맘케어(Heartmamcare)』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22,000	-	-	-	-
가맹비	2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모	-
개점 전 교육비	면제	-	-	-	-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당사 제공프로그램 및 광고·판촉비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담보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25,000	-
가입비	22,0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면제	-
계약 이행 보증금	3,000	부가세포함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비고
총계		5,367~5,653	-	전용 29㎡(약9평)
사무집기	자율	약792 ~ 924	-	시세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자율적으로 구매
통신기기	자율	약1,650	-	
홍보용 인쇄물	자율	약330	-	
교육자료	자율 / (요청시) 가맹본부	약885	-	
대여용품	자율	1,380~1,534	-	
초도물품 (교육자료30권)	가맹본부	33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선정조언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센터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센터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 입지선정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하트맘케어(Heartmamcare)』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최초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협의하실 경우 결제의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 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영 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	면제	-	-	-	-
리스료	-	해당 없음	-	-	-	-
광고·판촉	가맹본부	매월 330	매월 25일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부담이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광고 및 판촉비용 상승의 경우 재 책정
센터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시 : VII.1 외 비용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2023년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센터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상품 취급 여부, 서비스 품목의 운영상태 등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프로그램 등 감독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광고 및 판촉비용 상승의 경우 재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 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하트맘케어(Heartmamcare)』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W3,000,000 / VAT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 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 비품 · 집기 및 당사의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등)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로부터 14일 이내 전 항에 의하여 정산되고 되고 남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 [별첨7] 교재사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하트맘케어]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없음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서비스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서비스공급 중단 4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5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트맘케어 출퇴근 요금>

(단위: 원, 2023.12.01 기준)

구분		베이직		베스트	
		총액	예약금	총액	예약금
기본요금	1주	755,000	230,000	805,000	230,000
	2주	1,430,000	380,000	1,530,000	380,000
	3주	2,105,000	530,000	2,255,000	530,000
	4주	2,730,000	630,000	2,930,000	630,000
추가요금	토요일 추가 (09시~14시)		120,000		
	공휴일 / 일요일추가		150,000		
	큰아이	미취학1	10,000		
		취학1	6,000		

	신생아 쌍둥이	40,000
	기타 가족 1인당(남편제외)	5,000
	시간추가(시간당)	17,000 (쌍둥이 20,000)

<하트맘케어 입주형 요금>

(단위: 원, 2023.12.01 기준)

구분		총액	예약금
기본요금	1주	1,230,000	330,000
	2주	2,330,000	530,000
	3주	3,330,000	630,000
	4주	4,330,000	730,000
추가요금	토요일 추가 (금요일8 오후4시~ 토요일 오후2시)		250,000
	공휴일 / 일요일추가		320,000
	큰아이	미취학1	15,000
		취학1	10,000
	신생아 쌍둥이		50,000
	기타 가족 1인당(남편제외)		8,000(남편 상주시 포함)
	시간추가(시간당)		17,000 (쌍둥이 20,000)

<하트맘케어 10일 파트타임 요금>

(단위: 원, 2023.12.01 기준)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2시, 오후 1시 ~ 오후 6시 (시간은 오전, 오후 중 선택가능)
프로그램	신생아 케어 및 산모 휴식 도움
일과	산모음식준비, 청소, 신생아 빨래, 세탁기 돌리기
요금	1,200,000 (10일 근무, 일일 근무 5시간 기준) / 예약금 : 350,000
추가요금	큰아이 추가금액 6,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산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하트맘케어(Heartmamcare)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하트맘케어(Heartmamcare)]과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는 컨설팅회사인 주)비윤드엠에게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1.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구’단위, 나머지는 ‘시’ 또는 ‘군’ 단위 2. 영업지역을 귀하와 합의하여 그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첨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행정구역 기준 2.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변경)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 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 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센터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하트맘케어 (Heartmamcare)』 영업 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6.4	13.6	0	0

[별첨10]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증빙 서식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해당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하트맘케어(Heartmamcare)』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센터·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일반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3조 3항)

1. 귀하가 제21조(물품 및 서비스품목 공급의 중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귀하가 제23조(광고 및 판촉)제1항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광고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7.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9.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10.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11.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28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에게 제35조제4항과 같이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 당사가 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가맹계약서 제21조 1항)

7일 전 서면 예고 후 미 지정 시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6. ‘을’이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을’이 ‘갑’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8. ‘을’이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의 80%를 초과한 경우
9. ‘을’이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보고의무를 3회 이상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통지

하는 경

10. ‘을’이 ‘갑’의 상품관리 지시내용을 1년(12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1. ‘을’이 노후 된 센터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 ‘을’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 및 상담 과정을 변경·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상품 및 상담 과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을’이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 하거나 타 센터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15. ‘을’ 또는 ‘을’의 직원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을’이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관리자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7.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고객 서비스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센터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19.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20. ‘을’이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21.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센터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2. ‘갑’이 요청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을’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 ‘갑’이 ‘을’의 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는 경우.
23. ‘갑’ 또는 ‘을’이 상담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법률적 문제(소송, 기타 행정처분) 또는 기관(협회, 학회)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브랜드신뢰도를 실추하거나 센터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분명한 영업손해를 발생케 했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가맹본부 또는 하트맘케어(Heartmamcare)에 속한 가맹사업자에게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
24.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갑’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즉시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중단 사유 (가맹계약서 제21조 2항)

1. ‘을’이 파산한 경우
2.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경우
3. ‘을’이 강제집행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물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갑’의 서면동의 없이 ‘을’과 계약된 이외의 지역에 동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6. ‘을’이 제3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3조 4항)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귀하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

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필요한 절차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1) 상속에 관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자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산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	당사는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09:00 ~ 18:00	주5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무단 휴업 불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营业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자율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당사의 정책 준수 여부, 당사가 정한 상품 취급 여부, 당사가 정한 필수공급품목 취급 여부, 품질기준 준수 여부, 센터 위생 및 청결 상태, 각종 설비 관리 상태, 기타 가맹점 매뉴얼 규정 등 가맹점 운영 현황 전체	담당자 매장 방문 또는 유무선 연락→관리내역 점검→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서명 또는 통지→완료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20%	총 광고비의 80%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이내 지급	월 330천원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30%	총 광고비의 70%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 행사	할인행사	총 판촉비의 20%	총 판촉비의 80%	“	“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20%	증정상품 출하가 80%	“	“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20%	판촉물 제작비용 80%	“	“
	기타 전체 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해당 없음		“	“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직원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위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갑'의 시스템, 매뉴얼, 상담 기법, 제조, 판매, 영업, 계약 및 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지할 경우에 '갑'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이나 노하우 및 이들이 수록된 자료를 포함합니다.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자점매입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W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제33조(계약의 해지)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하트맘케어(Heartmamcare)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센터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W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제28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일천만원(W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당사의 승인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를 제작하였거나 또는

제작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 이천만원(W20,000,000원 / VAT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오십만원 (W5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6.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9~49m ² (9평~15평) /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5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4)번 항목 참조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지역 가맹점 현황 제공	D-55~69 (14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55 (1일)	
상권분석 및 임대차 계약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D-42~55 (14일)	
센터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35~41 (7일)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공사기간 중 교육완료) - 직원채용	D-7~34 (28일)	
개점준비 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 센터 업무모니터링	D-1~6 (6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센터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센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센터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센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센터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센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센터환경 개선사유	○ 센터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센터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센터환경개선: 20% ○ 센터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센터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센터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프로그램운용, 서비스OJT 자금결산, 사례교육, 인사근무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60시간	필수
개점 후 교육	서비스 보수 교육, 가맹점 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60시간	2,200	정직원 채용시 추가교육 진행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비용 없음 (예외 있음)	협의를 후 부담방법 결정

※ 교육일정 및 그 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는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센터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주) 강남,서초 하트맘케어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5, 11동 2층 202-1호(서초동,부속)
2	서울	(주) 용산중구마포 하트맘케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7-3, 1층 183호(청파동2가, 디테일씨빌딩)
3	서울	(주) 하트맘케어 (마포용산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A동 3층 (도화동, 효성해링턴스퀘어)
4	서울	(주) 영등포 동작 하트맘케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07-2호(여의도동, 제일빌딩)
5	경기	(주) 하트맘케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 702호(구미동,하나프라자빌딩)
6	경기	(주)경기 하트맘케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79(구갈동, 더브릭스 604호중 658호)

[별첨8-1~3] 신규 직영점 2,3,4번 사업자 등록증 [별첨9]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8,60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통합)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첨부2-1,첨부3-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손익계산서

[별첨3] 가맹점 리스트 및 평균 매출액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첨부1-3] 2021~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서초) - 법인전환 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첨부2-1] 2022년~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법인전환 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첨부2-2] 2022~2023년 손익계산서(통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첨부2-3] 2022~2023년 재무상태표(통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